

하 동 군

하 동 군 공 보

(2) 제 462 호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462호 2016. 08. 05. (금요일)

조 례

○ 하동군 조례 제2155호	「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
○ 하동군 조례 제2156호	「하동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4
○ 하동군 조례 제2157호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	6
○ 하동군 조례 제2158호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8
○ 하동군 조례 제2159호	「하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27
○ 하동군 조례 제2160호	「하동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5
○ 하동군 조례 제2161호	「하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37
○ 하동군 조례 제2162호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40
○ 하동군 조례 제2163호	「하동군 공중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42
○ 하동군 조례 제2164호	「하동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	47
○ 하동군 조례 제2165호	「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49
○ 하동군 조례 제2166호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51
○ 하동군 조례 제2167호	「하동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침부서류에 관한 조례」.....	63
○ 하동군 조례 제2168호	「하동군 도로복구 원인가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66
○ 하동군 조례 제2169호	「하동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68
○ 하동군 조례 제2170호	「하동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70
○ 하동군 조례 제2171호	「하동군 농가경영회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	77
○ 하동군 조례 제2172호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79
○ 하동군 조례 제2173호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86

규 칙

○ 하동군 규칙 제1148호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7
○ 하동군 규칙 제1149호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14
○ 하동군 규칙 제1150호	「하동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48
○ 하동군 규칙 제1151호	「하동군 농가경영회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78

회									
람									

발행 : 하동군 편집 : 기획조정실 (055)880-2042, 행정2042

하동군의회의에서 의결된 「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8월 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155호

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미 제출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제안의 보완)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에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서의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8조(제안의 보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미 제출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생략)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처리부서의장이 되고, 간사는 제안처리부서의 주무 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은 제안내용에 따라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15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구성하되, <u>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u>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8월 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156호

하동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하동군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수탁자의 의무) ①·② (생략) ③ 수탁자가 회관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하동군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받아야 한다.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8월 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157호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용되어 온 기금과, 지원된 용자 상황에 따른 원금 및 이자는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별도의 기금조례를 설치하여 승계 운영하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하동군장학재단에 출연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을 용자받은 자의 용자금 상황 및 회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③ 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되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의 재산 및 권리·의무는 하동군 일반회계가 포괄 승계하며 결산 잉여금은 하동군 일반회계로 세입조치 한다.

하동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8월 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규칙 제1148호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 및 회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8월 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158호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활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하동군의 출연금 및 적립기금(당초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승계)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4.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 수익금
6.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수익금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차액보전
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은 채무나 수급자가 대여받은 생업자금 채무의 신용보증에 드는 비용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6.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7.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12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 및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군 금고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④ 군수는 기금 및 이차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하동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4조제7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

제7조(지원신청) 제6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으려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7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이나 용도를 변경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4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1억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대여금 지급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후 4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00분의 1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00분의 7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

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사업이나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10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자차액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9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 차이가 있으면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차액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자차액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자차액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1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에 따른 신용보증에 드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제13조에 따른 하동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신청에 따른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4.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14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주민행복과장 또는 기금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6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대여된 대여자금은 이 조례에 따라 대여된 것으로 보고, 제9조제3항에 따른 이자를 적용한다.

하동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8월 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규칙 제1149호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지원원칙) 기금은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성격·규모·자체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자활기업의 정관이나 규약
3. 법인·단체의 정관이나 이사회 회의록(해당자에 한정함)
4. 관내 거주자 중 3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자본금 5억원 이상 기업체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재정정보

증서 또는 신용보증보험증권. 다만, 신용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보증의 경우에는 보증한도를 용자원금의 100분의 110이상으로 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증명서류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3항의 경우에는 무보증으로 기금을 대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이에 대한 절차 및 채권 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대여금의 상환)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대여금의 균등분할상환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시작하되, 매월 말일을 납부일로 한다.

제5조(상환금 연체자에 대한 조치) ① 기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상환금을 체납할 경우에는 상환금의 납부를 독촉하고, 보증인에게 연체사실을 통보하여 납부를 독촉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3회분의 상환금을 연체하였을 경우 기금을 대여받은 사람이나 보증인에게 일시에 대여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③ 조례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여자금을 시장 진입형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설립하는 자활기업의 작업장·점포 또는 사무실 등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경우, 건물주와 군수가 임대차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무이자로 대여할 수 있다.

제6조(사업자금 신청 및 기금의 지원결정) 군수는 조례 제7조에 따른 기금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동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사업과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기금 사용목적의 적합 여부
2. 신청사업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5. 신청자의 사회복지관련사업 추진(활동)실적 여부

제7조(기금의 교부) ① 기금의 지원을 받기로 결정된 사람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금지원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사업 시작 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지원사업의 목적과 범위 안에서 사업의 변경 및 지원금을 전용하려면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지원의 취소) ① 군수는 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에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기금의 지원결정에 대하여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을 경우
2. 지원 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시설과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지원 사업에 드는 경비 중 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③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지원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는 경우
3.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경우
4. 지원 사업이 공공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6. 이 규칙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제10조(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 군수는 조례 제4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복지증진사업에 전년도 기금운영수익금 내에서 현물이나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 제7조에 따른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에 해당 증명서류를 붙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군수는 기금집행의 적정여부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자에게 사업의 보고를 명할 수 있고 담당공무원에게 관계 장부나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지급대장(별지 제7호서식)
2. 현금출납부
3. 기관·단체별 대여금 상환카드

②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절차 및 모든 사항은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하동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자 활 기 금 지 원 신 청 서

기 관 명 (법인·단체)	대표(사업)자 성 명	사업자번호 (생년월일/성별)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명		
사 업 목 적		
사 업 개 요		

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 원)

총 사업비	기금신청금	자체부담금	후원금	기타

사업기간	
사업계획서	따 로 붙 임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자활기금을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생년월일(성별) :
 주 소 : (☎)

추 천 인 : ○ ○ ○ 지역자활센터장 (직인)

하동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자활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
3.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해당자에 한함)
4. 재정보증서
5. 기타 필요한 증명서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계획

- 가. 사업명 :
 나. 목 적 :
 다. 내 용 :
 라.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

(단위 : 원)

내역	소요금액	산출근거	지원신청액

마. 소요예산 조달방법

(단위 : 원)

구분	금액	비고
계		
자 활 기 금		
자체운용기금		
회 원 모 금		
독지가후원금		
기 타		

※ 기타내역 명시

바. 정부보조금(국비·도비·시비·자활기금)집행실적

(단위 : 원)

사업명	사업기간	보조금구분	보조금액	비고

2. 법인(단체)의 등록 또는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

가. 법인의 등록 또는 구성현황

임 직 원 수					회 원 수			
회 장	부회장	감 사	총 무	기 타	계	정회원	준회원	기 타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나. 활동실적

기 간	활 동 내 용	비 고

3. 법인·단체의 법적자격구비 현황

등록(허가,신고) 일 자	등록(허가, 신고) 내 용	등록(허가, 신고) 번 호	등 기 관 명

[별지 제3호서식]

재 정 보 증 서

- 기금대여자 성명 :
- 생년월일(성별) :
- 주 소 :
- 연 락 처 :

위 사람이 대여받은 자활기금에 대하여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4호에 따른 대여금의 상환을 보증합니다.

20

보증인 성 명 : (인)
(법인명/대표자명)

생년월일(성별) :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소 재 지)

연 락 처 :

- 첨 부 : 1. 재산세납부증명서 1부.
2. 자본금 5억이상 소명자료 1부.(법인에 한함)

하 동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자활기금 신청서 심의결과 통지서

기관·단체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번호 (생년월일/성별)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사업명									
심의결과	전부지원		일부지원		미지원				
결 정 내 용 (단위 : 천원)									
신 청			심 의 결 정						
계	소요경비재원				계	소요경비재원			
	기금 보조금	자 체 부담금	후원금	기 타		기 금 보조금	자 체 부담금	후원금	기 타
상환기간	5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								
상환조건	이 자 율	연 2%	연체이자	연 7%					
관계규정	자활기금 지원·대여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이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p>「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p> <p>년 월 일</p> <p>하 동 군 수</p>									

[별지 제5호서식]

자활기금 지원금 교부신청서

사 업 자	(전화 :)			
사 업 장 소	(전화 :)			
사 업 기 간	년 월 ~	년 월		
신 청 금 액	금	원		
신 청 내 역				
총 사 업 비	소요경비재원 (단위 : 천원)			
	기금보조금	자체부담금	후원금	기 타
<p>「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신 청 자 주 소 : 기관(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직인) 예 금 계 좌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p>				
하동군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자활기금 지원금 정산서

1. 사 업 명 :
2. 지원금집행상황

(단위 : 원)

내역	수입액	지출액	잔액	비고
계				
자 활 기 금				
자 체 부 담 금				
후 원 금				
기 타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 지원금을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법인(단체)명 :

대표(사업)자 : (인)

- 붙임 1.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2. 지원금 집행내역 1부.
 3. 행사유인물 및 사진 등 각 1부.
 4. 각종 증빙자료 각 1부.

하동군수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자 활 기 금 지 급 대 장

년월일	적	요	지 급 처	지 급 액	비 고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8월 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159호

하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하동군의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군민은 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군의 양성평등정책 수립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 양성평등의 촉진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적 조치) 군수는 특정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양성평등정책

제5조(성별영향분석평가) ① 군수는 제·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과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2조,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을 선정하고 분석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분석평가책임관은 양성평등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군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3조의2에 따라 하동군 성별영향 분석평가 위원회(이하 “분석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운용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다.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⑤ 제4항의 분석평가위원회는 하동군 양성평등위원회 내에서 별도 구성한다.

제6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성인지 통계) 군수는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 보급하고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8조(성인지 교육) 군수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양성평등 촉진 및 참여

제9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군수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하동군에서 관리하는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공직 참여 등)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채용·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1조(정치 참여) 군수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경제활동 참여) ①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모집, 채용, 교육훈련, 승진, 퇴직 등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국제협력) ① 군수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조약을 체결하거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국제개발 협력을 실시함에 있어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간의 교류와 연대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평화통일 과정 참여) ① 군수는 국내외 평화분위기 조성 및 통일 추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국내외 여성 평화증진 및 통일을 위한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5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라 소속 직원의 임신, 출산, 수유, 육아기간 동안에 이들을 특별히 보호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부성 보호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

제16조(양성평등의식의 제고) 군수는 가정·학교·사회교육에서 양성평등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지원하여야 한다.

제17조(일·가정 양립 지원) 군수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하여 영유아 보육, 방과 후 아동 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여성인적자원의 개발) ① 군수는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2.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3. 그 밖에 여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여성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복지증진) 군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지원·추진하여야 한다.

1. 저소득 한부모 가정·미혼모·가출여성·요보호여성의 발생 예방 및 자립 지원
2.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그에 따른 피해자 보호
3. 성매매 피해여성 발생 예방 및 이들에 대한 선도·보호사업, 교육·직업훈련 등 재활 지원
4. 여성 노인 및 여성장애인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
5.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 및 생활보장을 위한 지원

제20조(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군수는 양성평등 참여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여성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군수는 여성의 복지증진 및 능력발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2조 (성차별의 개선 등) ① 군수 및 소속기관장은 문서·회의·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예방하여 양성평등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 및 소속기관장은 직장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성매매사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연 한 차례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차별이나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양성평등 주간)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라 양성평등 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주관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세미나, 심포지엄 등 연구 발표 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 등에 대한 군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및 홍보

제24조(유공자 포상) 군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양성평등 정책 추진 등 양성평등 촉진에 현저하게 공이 있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5조(여성 친화도시) 군수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될 수 있는 여성 친화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양성평등위원회

제26조(설치)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 양성평등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2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정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여성인권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관련 주요사항

제2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 군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주민행복과장
2. 위촉직 : 여성과 관련한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여성 정책 개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제29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한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사정에 따라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32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운영) ① 위원회는 전문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4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수에게 전문기관, 단체 등을 통한 조사·연구를 건의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실비변상)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연구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위원회 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하동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 설치·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동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 설치·운영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하동군 여성발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하동군 양성평등위원회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하동군 성희롱 예방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8월 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160호

하동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하동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계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거부 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계분쟁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 측량성과의 연결교차 이내인 경우 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이의신청을 중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가·허가·조정 등을 이유로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p><삭 제></p>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8월 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161호

하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자”를 “호의 사람”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2조제3항제2호 중 “정통한 자”를 “정통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인정한 자”를 “인정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2조(구성) ① ----- ----- -----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중 민원과장, 재정관리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 ----- 호의 사람 ----- ----- 사람으로 --.
1.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2. 변호사, 부동산학전공 교수, 지방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한국감정원 직원, 감정평가사, 부동산 중개업자, 농협직원 등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정통한 자	2 ----- ----- ----- ----- 정통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3. ----- 인정한 사람
제5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임기) ----- 2년----- -----.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8월 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162호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 중 “법 제80조제1항제1호”를 “법 제80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납세담보의 요구) 군수는 법 제26조제2항 및 제82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24조(납세담보의 요구) ----- ----- ----- ----- ----- -.
1. 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	1. 법 제80조제1항 ----- -----
2. 3. (생 략)	2. 3. (현행과 같음)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8월 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163호

하동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검사”를 “검사하게”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1세대당 1명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되어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로 한다)를 받아 대표자 1명을 선정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5호 중 “당사”를 “당사자”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분쟁대상	아파트명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위 치		동수/세대수	동 세대
신청인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input type="checkbox"/> 입주자 <input type="checkbox"/> 사용자 <input type="checkbox"/> 관리주체 <input type="checkbox"/> 입주자대표회의 <input type="checkbox"/> 리모델링조합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input type="checkbox"/> 입주자 <input type="checkbox"/> 사용자 <input type="checkbox"/> 관리주체 <input type="checkbox"/> 입주자대표회의 <input type="checkbox"/> 리모델링조합				
조정신청 내 용				
신청취지 및 사 유				
당사자간 교섭경과				

「하동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동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 공동주택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1세대당 1명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되어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로 한다),
대표자 선정(1명 이내)서류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 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관리 주체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 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서류를 <u>검사</u> 하는 등 감 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군수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 를 거부해서는 아니된다.	제12조(감독) ----- ----- ----- ----- <u>검사하게</u> ----- ----- ----- -----.
제17조(분쟁조정 신청)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분쟁조정 신청)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공동 주택 전체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1세대당 1명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되어 분쟁 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로 한다) 를 받아 대표자 1명을 선정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를 분쟁조정위원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서(1세대당 1명 원 칙으로 하되, 소유자의 재산권 과 관련되어 분쟁이 있는 경우 에는 소유자로 한다)	<삭 제>
2. 대표자 선정(3명 이내)서류	<삭 제>
3.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해당 사항 이 있는 경우에 한함)	<삭 제>
제18조(조정신청의 반려 및 종결) 분 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 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정신청을 반려 또는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6 호 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18조(조정신청의 반려 및 종결)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조정기간 중 당사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5. ----- 당사자 -----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8월 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164호

하동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

하동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8월 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규칙 제1150호

하동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하동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
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8월 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165호

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8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등록) ① ~ ③ (생략) ④ 등록된 한옥의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변경된 소유자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11조(등록)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제>
제18조(준용) ① (생략) ②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외에 용자금을 희망하는 자는 「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준용) ① (현행과 같음) <삭제>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8월 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166호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이율은 발행 당시 위탁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지형도상에 표준단위면적(100m×100m)을 설정하여 단위면적안 최고표고와 최저표고의 차이를 수평거리로 나누어 계산한다.

제2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공장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1항”을 “영 제84조제1항 및 제84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30퍼센트 이하

제30조제18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30퍼센트 이하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4항 및 제5항”을 “영 제84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 30퍼센트 이하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제31조제3항 중 “영 제84조제5항제1호”를 “영 제84조제6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84조제5항제2호”를 “영 제84조제6항제2호”로, “건폐율은”을 “경우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영 제84조제6항”을 “영 제84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7항제1호”를 “영 제84조제8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에 한함)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5조제3항”을 “영 제85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 14 제2호에 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7 제2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p>	<p>제11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이율은 발행 당시 위탁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로 한다.</p>
<p>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p> <p>1. (생 략)</p> <p>2.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지형도상에 표준단위면적(100m×100m)을 설정하여 단위면적안 최고표고와 최저표고의 차이를 수평거리로 나누어 계산한다.</p> <p>3. (생 략)</p> <p>② (생 략)</p>	<p>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 ----- ----- ----- ----- 1. (현행과 같음)</p> <p>2.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지형도상에 표준단위면적(100m×100m)을 설정하여 단위면적안 최고표고와 최저표고의 차이를 수평거리로 나누어 계산한다.</p> <p>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9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생 략) ② <신 설></p>	<p>제29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p>

	<p>우 공장을 건축할 수 있다.</p> <p>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p> <p>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p> <p>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p> <p>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p> <p>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p> <p>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p> <p>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p>
--	--

제30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

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15. (생 략)
-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단서
신설>
- 17. (생 략)
-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단서
신설>
- 19. ~ 21. (생 략)

제31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 ① (생 략)
- ② 영 제8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2. (생 략)
- 3. <신 설>

제30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

제1항 및 제84조의3-----
-----.

- 1. ~ 15. (현행과 같음)
- 16. ----- . 단, 성
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30퍼센트 이하
- 17. (현행과 같음)
- 18. ----- . 단, 성
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30퍼센트 이하
- 19. ~ 21. (현행과 같음)

제31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 ① (현행과 같음)
- ② 영 제84조제6항-----
-----.
- 1. ~ 2. (현행과 같음)
- 3.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
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
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
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 30
퍼센트 이하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
정될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

③ 영 제84조제5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일반상업·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 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④ 영 제84조제5항제2호에 따라 녹지·관리·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32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제84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의 농어업인구현황,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 1. · 2. (생 략)
- 3. <신 설>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③ 영 제84조제6항제1호-----
-----.

④ 영 제84조제6항제2호-----
----- 경우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32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
-----.

② 영 제84조제8항제1호-----
-----.

- 1. · 2. (현행과 같음)
-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에 한함)

제34조(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4. (생략)
- ② (생략)

제34조(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4.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4호 관련)

1.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관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2.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관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7]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제17호 관련)

1.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2.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용만 해당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 가 기 준
가. 공통분야	(1) ~ (2) (생 략)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경사도·임상 및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등을 참작하여 도시·군계획조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정 등에 관한 조치가 포함된 개발행위내용에 대하여 해당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소속된 도시계획위원회(제55조제3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제57조제4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골프장, 스키장, 기존 사찰, 풍력을 이용한 발전시설 등 개발행위의 특성상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 바.	(생 략)

2. ~ 3. (생 략)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8월 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167호

하동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이 호에서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23조에 따라 군수가 도로관리청인 도로를 말한다)로서 군수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도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증 등 도로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해당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기관과 체결한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자연공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립공원: 「자연공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공원사업의 시행이나 공원시설의 관리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자와 체결한 군립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그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8월 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168호

하동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4조 및 제67조”를 “제91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제2조”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허가시”를 “공사개시 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제91조-----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 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도로 및 시설물, 인공구조물, 부속물 등 전부를 말한다. 2. 3. (생 략)	제2조(정의) ----- -----. 1. -----제2조 조 ----- -----. 2. 3. (현행과 같음)
제3조(부담금 등 징수) ① (생 략) ② 사리도를 제외한 도로의 굴착지 복구부담금은 허가시에 선납하여야 하며, 허가면적 및 양을 초과할 시는 추정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종료된 후에 추가 징수하거나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제3조(부담금 등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공사개시 전----- ----- -----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8월 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169호

하동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는 행위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하는 행위

제3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과태료 부과와 징수) ① 군수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1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3조(과태료 부과와 징수) ① ----- ----- ----- ----- --.
1.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는 행위
2.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하는 행위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 조립·수리·용접 등의 작업을 하는 행위	<삭 제>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8월 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170호

하동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장애인 수첩을 소지한 자는”을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의 경우 해당 주차요금의 60%를 경감한다.

제3조의2제7항을 제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0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 ③ (생 략) <제3조의2제7항에서 이동>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공공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 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u>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① 「 <u>도로교통법</u> 」 제2조제16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및 그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① 「 <u>도로교통법</u> 」 제2조제22호에 따른 ----- ----- ----- ----- -----.
② 「 <u>장애인복지법</u> 」 제2조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자로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장애인 수첩을 소지한 자는 주차요금을 50% 경감한다.	② -----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은 -----.
③ 「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 제6조의4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 「 <u>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u> 」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	③ -----, 「 <u>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2호부터 제4호

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시를 부착한 자가 본인소유의 비사업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④ 배기량 800CC 미만 경형자동차의 경우 해당 주차요금의 60퍼센트를 경감한다.

⑤·⑥ (생 략)

⑦ 공공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 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④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의 경우 해당 주차요금의 60%를 경감한다.

⑤·⑥ (현행과 같음)

<제3조제4항으로 이동>

⑧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0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

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생략)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

- 1. (현행과 같음)
- 2. 공익법인

② 위탁료는 도로점용료, 사유재산대부료, 주차수요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3개월 단위로 선납하여야 한다.

구분	선정 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 방법
제 1 항 제 1 호 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방법	군수가 정하는 금액	군 수 가 정 하 는 금액
제 1 항 제 2 호 의 경우	경쟁 입찰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군유재산 대부료 상당액	3 개 월 단 위 로 선 납
그 밖의 경우	경쟁 계약	입찰가격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3조제1항 관련)

(단위 :원/1구획당)

구분	1회 주차권				1일 주차권	월정기 주차권	
	주차요금		가산금			주 간	야 간
	30분까지	30분~1시간	매10분 초과	30분 단위 최대 가산금			
1급지	면제	500	200	500	6,000	75,000	56,000
2급지	면제	500	100	-	2,400	30,000	22,000
비고	※ 전통시장 내 주차장은 전통시장 이용 확인 시 30분 추가 면제				※ 1일 주차 및 월정기 주차는 노외주차장에 한함		

= 비 고 =

- 이 주차 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 노상주차장의 경우, 주차이용률 제고를 위해 주차 후 2시간까지 1회 주차권 요금을 적용한다. 2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경과시간의 주차요금에 그와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3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주간의 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 가. 4월 ~ 10월 08:00 ~ 20:00
 - 나. 11월 ~ 3월 09:00 ~ 19:30
- 급지구분
 - 1급지 : 하동읍, 진교면 등 도시계획 지역에 한한다.
 - 2급지 : 1급지 이외의 지역에 한한다.
- 위 요금은 승용차, 15인승 미만 승합 또는 버스,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또는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1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자동차의 크기가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 가. 15인승 이상 45인승 미만 승합 또는 버스, 2.5톤 이상 11톤 미만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 기준요금의 2배
 - 나. 45인승 이상 버스 또는 11톤 이상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 기준요금의 3배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4조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탁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경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외한다). 공공용 시설 중 방송국	시설면적 150㎡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 : 1대 시설면적 150㎡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4의2. <삭제 2005.3.10.조1076>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전용면적 75㎡당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이하의 경우에는 0.7대 이상)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의 경우에는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의 경우에는 정원 15인당 1대, 관람장의 경우에는 정원 100인당 1대
7.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
8. 창고시설, 학생용 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
9. 기타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

하동군의회의에서 의결된 「하동군 농가경영회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8월 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171호

하동군 농가경영회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

하동군 농가경영회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및 관리·운용되어 온 기금, 상환금 및 그 밖의 수입은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② 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되는 농가경영회생기금자금의 재산 및 권리·의무는 하동군 일반회계가 포괄 승계하며 잉여금은 하동군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한다.

하동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농가경영회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8월 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규칙 제1151호

하동군 농가경영회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하동군 농가경영회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8월 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172호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반환 청구 할 수 있다”를 “반환한다”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대해서는 임차인이 모두 책임을 진다”를 “대한 책임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임대 농업기계 사용 신청서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임대사업의 농기계를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 다 음 -

- 1. 농기계명 :
- 2. 수 량 :
- 3. 사용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간)
- 4. 작업종류 :
- 5. 작 업 량 :
- 6. 사용조건 및 준수사항
 - 부과된 사용료를 기간 내에 반드시 납부하겠음
 -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사용기간을 지키겠음
 -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영업 행위를 하지 않겠음
 - 농업기계를 망실·훼손한 때는 원상회복을 하겠음
 - 사용 후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겠음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남/여)
 전 화 번 호 : (휴대폰 :)

하동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농업기계 임대 및 사용허가대장

일련 번호	신청 계약일	신청인		임대 농업기계				임대 기간	임대료 (원)	반납 예정일	입출고확인		결 재		
		성명 (남/여)	주 소	기종명	제작 회사	규격	관리 번호						담당자	담당	과장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82) 제 462 호

[별지 제5호서식]

농업기계 임대사업 임대료 징수대장

일련 번호	징수일	임 차 인		임 대 기 종		임대 기간	임대료수납액(원)	결 재		
		성명 (남/여)	주 소	기종명	수량			담당자	담당	과장

[별지 제6호서식]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신청서

기종명	형식	기대번호	작업내용	사용기간	면제사유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 농업 기계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생년월일 : (남/여)
 성 명 : (인)
 전화번호 : (휴대폰 :)

하 동 군 수 귀 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임대료의 반환) ① 납부한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반환 청구 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생 략)	제10조(임대료의 반환) ① ----- ----- -. ----- ----- 반 환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①· ② (생 략) ③ 임대 농업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사고 등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모두 책임을 진다.	제13조(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임대 농업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8월 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173호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를 “아니한다”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망그러뜨렸을”을 “파손하였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를 “대한 책임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하동군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	(남/여)
사	시 설 명			
	사 용 목 적			
용	사 용 기 간			
	구	경기(행사)개요	설비개요	
분	중 계 방 송		조 명	
	녹 화		확 성 기	
	사 용 내 용			
관 람 (이용) 료	특별관람(이용)	매 원		
	일반관람(이용)	매 원		
	초 대 권	매 원		
	군 경, 학 생	매 원		
	예 매 처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입증지]

신청인

(인)

하 동 군 수 귀 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생 략)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u>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u></p>	<p>제1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아니한다.</u></p>
<p>제19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체육시설 및 체육시설물을 <u>망그러뜨렸을</u>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u>대하여</u> 사용자는 민사 또는 <u>형사상</u> 책임을 진다.</p>	<p>제19조(손해배상) ① ----- ----- ----- <u>파손하였을</u> ----- ----- ----- ② ----- ----- --- <u>대한 책임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u></p>